

서울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
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□ 존경하는 박상혁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!

안녕하십니까? 아이수루 의원입니다.

□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

□ 최근 디지털 정보화의 발달로 인해 일반 시민 외에도 청소년들 사이에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.

□ 특히, 디지털 성범죄의 각종 피해는 교육의 주체인 학생뿐만 아니라 교직원 등에도 전파 및 확대되고 있으나, 이에 대한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이 실질적으로 미비합니다.

□ 따라서 이에 대응하고자 디지털 성범죄 예방에 대한 교육 지원

강화 및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통한 피해자 보호 지원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.

- 이를 위해, 조례의 제목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에 대한 사항으로 변경하고, 안 제1조 및 제2조의 경우, 피해자는 학생에서 교직원까지 범위를 확대하며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주 목적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.
- 또한, 안 제3조 및 제 4조의 경우, 피해자를 정의함에 있어 교직원과 피해자에 대하여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하고, 계획의 수립 시,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보호 지원을 규정하고자 합니다.
- 마지막으로 안 제8조의 경우,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피해자 지원 상담 및 보호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.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